



EC의 원산지 규정 비교 분석(II)

차 례

1. 서언
2. 원산지 규정의 일반개요
1) 비율기준 검증
2) 세번변경 검증
3) 기술적 검증
3. 비특혜원산지 규정
1) 절차
2) 실체법
4. 특혜원산지 규정
1) 절차
2) 실체법
5. 반덤핑 측면의 원산지 규정
6. 기타 원산지 규정
7. 결론

3. 비특혜원산지 규정

1) 절차(Procedure)

美國에서는 재무부 관할기관인 美세관이 원산지규정 적용을 담당하고 있다. 美세관은 원산지표시법(Marking Law) 시행에 대한 일환으로 제품통관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을 해야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美 국제무역 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다.

美 관련법에 따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은 수입하기 전에 美 세관으로부터 사전판정(Prospective Ruling)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정결과는 서한 양식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발송되며, 또한 美 세관결정으로서는 세관 관보(Customs Bulletin)나 재무부 결정사항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다. 재무부 결정안은 연방관보에 발표되어 이해당사자로 부터 의견(Comment)을 수렴한뒤 최

종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EC에서는 EC 관련기관과 회원국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복잡한 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EC 집행위와 각 회원국의 관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C의 일반 원산지규정(Basic Origin Regulation)에 따라 회원국 대표로 원산지위원회가 구성되며 통상 DGXXI, Directorate B Division 2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원산지 결정의 행정 절차와 관련, 공식적인 절차와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를 통하여 결정되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식절차에 따른 제품별 원산지규정은 관보(Official Journal)에 발표되지만 비공식 절차에 따라 취해지는 결정은 발표되지 않는다.

일반 원산지규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해외 수출업자들은 자발적으로 EC 집행위와 원산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출하기 전에 비공식 절차를 통해 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만장일치 판정을 받고 있다.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이러한 관행은 원산지에 대한 행정판정이 비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며 생산업체가 생산 및 부품수급 전략을 변경할 경우 불리한 결정사항도 변경될 수도 있다.

어느 기업이 한 회원국이나 원산지 위원회 또는 EC집행위의 원산지 결정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직접적으로 이러한 결정 내용에 대하여 유럽재판소(ECJ)에 제소할 수는 없으며 회원국법에 의존해야 한다.

이때 개별국 재판소는 동건을 유럽재판소에 통보해야 하는 데, 이는 몇몇 회원국 세관을 통관한 외국 생산업체가 동시에 여러 회원국에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으로는 1978년 Yoshida와 현재 진행중인 Brother Case가 있다. 원산지와 관련된

사법심에 대한 EC제도는 관련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1심에서 각국 재판결과가 상이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원산지 결정이 호주세관(ACS)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호주세관의 결정은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나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재소할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Australia) 또는 대법원(State Supreme Courts)에 제소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다른 국들의 관세법과 같이 캐나다 관세법은 일반관세(General Tariff)와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관세를 구분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입법과 시행령은 “Department of Finance” 관할에 속하며 행정은 DNR (Department of National Revenue, Customs, Excise)가 담당하고 있다. 1988까지 원산지에 대한 캐나다 당국의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정 내용은 행정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었는데, 이후 美,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관세수정과 원산지 결정에 대한 공식절차가 채택되었다.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수입전이나 수입후 30일 이내에 캐나다 세관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후 2년내에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DNR”이 별도 판정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은 최종판결이 된다.

한편 DNR의 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요청이 있을 경우 DNR은 원산지에 대한 비공식(non-binding)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일본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은 재무성이 채택하여 관보를 통해 공표하며 동 규정은 日本세관에 의해 적용된다. 日本세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2개월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기각될 경우 재무성에 제소를 하게 되며, 재무성 결

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각국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특혜(특혜) 원산지 규정은 세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절차제도는 美國이 가장 완성도가 높으며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부 결정안의 사전발표는 훌륭한 관행으로서 여타국에서도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전 판정절차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GATT 협약이 채택될 경우 의무조항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은 미국에서만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EC에서도 판결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비특혜 원산지 결정에 대한 만족할만한 사법심이 없는 듯하다.

2) 실체법(Substantive Law)

美國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실질적 변형을 제조과정 결과 상품명이나 특성, 용도 등에서 전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검증(technical test)을 사용하는 듯 하며, 이런 검증을 Case별로 적용된다.

법원과 세관 어느 쪽도 정의에 대한 일치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미국의 경우 흥미있는 문제는, 법규의 정책적 목적이 비특혜 원산지 자격부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형 정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원산지가 관세 환급 규정과 원산지표시 관련법령, 최혜국 관세율, 자율규제협정(VRA), 섬유쿼타 등에 따라 결정될 경우 실질적인 변형의 정도에 차이를 둘 것인지?

행정부나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EC 비특혜 원산지규정 5조”는 2개국 이상이 제조에 관련된 제품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최종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비된 공장에서 제조되어지고 또한 전혀 새로운 제품의 생산결과나 제조의 중요단계를 나타내는 국가를 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별 원산지 규정과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EC의 관계기관과 원산지 위원회는 비특혜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적 검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 비율도 관계가 있으나 이는 기술적 검증으로 최종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C에서 기술적 검증은 종종 역내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지녀 왔는데, 즉 지퍼, IC, 복사기 등에 대한 특정제품별 원산지 결정에서 EC는, EC 혹은 제3국내의 일본업체(IC, 복사기)가 제조한 제품들에 대해 일본산으로 판정하였다. 볼베어링에 대한 판정도 모르긴 몰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디오, TV 등에 대한 제품별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EC원산지 위원회의 비공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45% 부가가치의 적용을 위해서 이윤, 일반경비를 포함한 조립 및 마무리, 관리비용 등이 라디오인 경우 공장도 가격(Ex-Works Invoice)의 42%, TV인 경우 공장도 가격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역내의 “비교적 동일한 상황下에” EC에서 제조되어 수출을 목적으로 한 라디오 및 TV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립비용이 이미 각각 40%와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45% 달성에 별문제가 없을 Philips, Grundig, Thomson과 같은 EC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한편으로 반덤핑이나 로마조약 115조의 쿼타와 같은 무역규제를 받지 않고 EC에 수출을 원하는 외국업체들은 이러한 가정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조립 및 관련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홍콩, 중국과 같은 저임의 국가에서는 조립비용이 EC 산업에서 적용되는 비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TV의 경우 원산지는 공장도 가격의 35%를 쉽게 차지하고 있는 브라운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호주의 일반 비특혜규정은, 제품 공장도 가격(Factory or Works Cost)의 75% 이상이 해당국 노임 또는 원자재 가격(혹은 노임+원자재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同국가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原産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5% 의무사항은 바꾸어 말해,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혹은 원료)의 25%라는 뜻이다. 호주의 규정은 몇가지 관심거리가 있는데 첫째, 호주는 비특혜 원산지 결정을 위해 1차적으로 현지부품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그 비율도 매우 높다.

호주 세관의 현지부품 산정 방식은 EC보다도 제한적이며, 캐나다 관련 규정에 버금가는 제한조치로서 호주의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조사대상 5개국중 가장 제한적인 조치일 것이다.

둘째로 제3국 및 호주 원산자재의 누적가능성 즉 공여국개념(호주산 부품은 GSP 수혜국 Local Content로 인정)은 얼핏 보기에 고율의 현지부품기준 의무 조항을 완화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엄격한 Local Content 개념이다. 공여국 개념(Donor Country Concept)이 반드시 GSP 맥락에서 GATT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과 관련한 GATT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이 개념은 제3국 부품구입 보다도 호주산부품 구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호주 산업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란 점이다.

끝으로, 호주산업이 문제의 제품을 생산하

지 않을 경우 현지부품 비율을 75%에서 25%로의 인하 가능성은 권장할만하나, 어떤 제품은 수입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그 수입품의 원산지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캐나다의 최혜국대우 원산지규정도 역시 현지부품기준 검증을 사용하나 비율은 호주보다도 훨씬 낮으며 수입품 생산원가의 최소 50%의 가치가 최혜국 혜택을 받는 국가나 캐나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도 역시 공여국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캐나다법이 최혜국에서는 무제한적인 누적개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Positive List(세번변경이 없어도 원산지 자격을 갖는 공정 리스트)와 Negative List(세번변경이 되어도 원산지 자격이 없는 공정 리스트) 양식으로 수정된 CTH(세번변경) 검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특혜 협정같은 별도의 차별적인 무역정책이 거의 없어, 단지 원산지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4. 특혜원산지 규정

가장 널리 알려진 특혜 무역제도는 GSP 제도이며, 일본을 제외한 조사대상 4개국들은 EC를 필두로 각종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모든 경우 각 특혜 무역협정은 고유의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수혜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특혜대우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동제품이 쿼타나 반덤핑 같은 무역규제 조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전적으로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GDP의 GSP 자격여부는 Asean(태국, 인니, 말연, 필

리핀, 싱가포르, 브르나이)에서 생산된 원자재(미국, EC, 일본)나 모든 수혜국의 원자재(호주, 캐나다)등이 누적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 GSP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의 말레이시아 현지 생산 GDP의 반덤핑 관세 제3국 우회여부에 대한 결정은 EC와 미국에서는 비특혜원산지 규정(누적개념 불가)에 의거 이루어지며, 특히 미국에서는 제3국 우회조항에 대한 특별조항에 의거 결정되고 있다.

1) 절차(Procedure)

미국의 비특혜 및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절차는 동일하나 EC에서는 FTA와 같은 쌍무적 특혜 무역협정과 GSP와 같은 일방적인 특혜 무역협정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前者는 모든 조약국이 참가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원산지관련 결정사항이 이루어지며, 後者와 관련한 원산지 결정은 집행위와 원산지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법심사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3장. 1)에 기술된 바와 동일하다.

호주(캐나다)에서 수입업자는 세관에 비공식적인 견해(Advice)를 요청하여 수입품의 특혜 자격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은 이러한 사전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세관이 특혜 요청을 인정치 않았을 경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 방법은 준사법적 기관인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의 범위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착오나 법규상의 오류들에 대한 것이다.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결정은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로 제품의 소유자는 연방 또는 주립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법원은 법조항과 사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세째로 법적용의 착오여부 심사를 위해 호

주 고등법원 및 주립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캐나다 법령은 美·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문제와 기타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문제를 구분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와 관련하여서는 앞서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한 3장. 1)에 기술된 절차와 동일하나 美·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문제는 좀더 복잡하다.

우선 수입업자는 세관의 결정후 90일 이내에 Tariff and Values Administrator(TVA)에 제소할 수 있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내에 제소할 수 있다. 두번째로 수입자는 TVA의 결정내에 또는 특정조건을 갖출 경우 2년 이내에 DNR 次官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수입업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에 제소할 수 있으며, CITT의 결정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연방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GSP에 대한 제도적 장치 즉, 유일한 일본의 특혜제도는 비특혜규정과 동일하나 일본의 세관은 사전 판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의 결정내용은 1년간 유효하다.

2) 실체법(Substantive Law)

도표 1~5는 국별 특혜원산지 규정 적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GSP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GSP 원산지 규정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미국, EC, 일본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변형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GSP규정은 실질적인 변형과 아울러 비교적 낮은 35%의 현지부품 의무조항도 요구하고 있다.(누적개념은 제한되어 있음) 일본에 있어서 비특혜 원산지 CTH검증은 특혜원산지 경우 보다 완화되어 있다.

EC에서는 GSP원산지 규정에 비특혜 원산

지 규정보다 엄격하며, EC 사법재판소(ECJ)도 GSP의 목적이 주요공정이 수행되는 개도국 산업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이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개도국의 자국산업 개발에 대한 EC의 관심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누적(Cumulation)개념의 허용을 꺼리는데서 다소 모순이 생기는데 이는 여러 Case에서 2개국 이상의 개도국의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GSP 공여거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C의 GSP원산지 결정에 있어 또다른 제한적인 특징의 하나는 Microphone, Audio, Video기기 같은 여러 전자제품에 현지산 트랜지스터를 전량 사용하여야만 원산으로 인정하는 의무조항을 갖고 있다.

이는 일견 일본산 트랜지스터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트랜지스터가 日本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종종 GSP공여를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사용 관련 조항은 현재 EC가 공여국 개념을 인정치 않고 있어 EC원산 트랜지스터 수요 증대에 별 효과가 없는 바 EC 트랜지스터 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EC는 그간 여타 특혜 원산지 요건에 트랜지스터 관련 조항을 삭제해 왔다. EC의 GSP 운용안의 엄격한 의무조항과 복잡성 때문에 그 효용율(Utilization Rate)은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록 호주 및 캐나다의 GSP 원산지 규정이 각각 50%, 60%의 현지부품 조달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누적개념과 공여국 개념으로 그 실효성은 더 높다. 보다 개방적인 호주와 캐나다의 규정은 제한적 누적개념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미국, EC, 일본에 대한 좋은 보기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 일, EC 등은 GSP 기본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다.

표 1. 미국의 특혜원산지 규정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stantial transformation and local direct cost-added of 35% of the appraised value - dual substantial transformation possible - full and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among members of free trade associations - direct consignment rule
Caribbean Basin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stantial transformation and local direct cost-added of 35% of the appraised value - dual substantial transformation possible - unlimited cumulation possible among all CBI beneficiaries - limited donor country benefit - direct shipment from any CBI beneficiary possible
Insular pos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direct cost-added of 30% of the appraised value for articles eligible for CBI preferences - local direct cost-added of 50% of the appraised value for other articles - unlimited donor country benefit
Freely associated st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direct cost-added of 35% of the appraised value - direct shipment rule
U.S.-Israel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direct cost-added of 35% of the appraised value - dual substantial transformation possible - limited donor country benefit - direct shipment rule
U.S.-Canada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H rule and/or 50% domestic content test - donor country benefit in case of domestic content test

표 2. EC의 특혜원산지 규정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expressed as CTH test, technical test or import content test - partial and regional cumulation among certain regional groupings¹⁶⁵ - no donor country benefit - direct consignment rule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EFTA	Idem, but ; donor Contry benefit
ACP countries	- cumulation among EFTA under certain conditions - donor country benefit -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 direct shipment from ACP countrles
Mashreq	- donor country benefit - no cumulation
Maghreb ¹⁷⁰	- donor country benefit -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Cyprus	- donor country benefit
Israel	- donor country benefit
Malta	- donor country benefit
Yugoslavia	- donor country benefit
OCTs	- donor country benefit -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Faroe islands	- donor country benefit
Ceuta, Melila, Canary islands	- donor country benefit -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Territores occu- pied by Israel	- donor country benefit
Hungary, Po- land, Czechoslo- vakia	- donor country benefit - regional cumulation possible

표 3. 호주의 특혜원산지 규정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GSP	- last process - 50% factory or works cost - full and global cumulation among GSP beneficiaries - donor country benefit - no direct shipment rule
CANATA	- 75% factory or works cost - direct shipment rule
Australia- Papua New Guinea	- last process - 50% factory or works cost - donor country benefit
SPARTECA	- last process - 50% factory or works cost - donor country benefit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ANZCERTA ¹⁷⁶	- last process - 50% factory or works cost - donor country benefit - direct shipment rule

표 4. 일본의 특혜원산지 규정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GSP	- value of imported parts and materials may not exceed 40% or 45% of the FOB price ; CTH test ; double processing test or mixed test - parital and regional cumulation for ASEAN - donor country benefit - direct shipment rule

표 5. 캐나다의 특혜원산지 규정

Trade regime	Origin rule elements
GSP	- value of imported parts and materials may not exceed 40% of the ex factory price - full and global cumulation among GSP beneficiaries - donor country benefit - finishing in beneficiary - direct shipment rule
LDDC	Idem, but - value of imported parts and materials may no exceed 60% or the ex factory price
CARIBCAN	Idem
BPT	- 50% cost of production - cumulation among beneficiaries - finishing in beneficiary - direct shipmetn rule(transshipment through non-Common-wealth port is not allowed)
A&NZ	- 50% cost of production - donor country benefit - finishing beneficiary - direct shipment rule
U.S.Canada FTA	- CTH, and/or 50% domestic content test - last process - direct shipment rule